

호소문

1. 판사와 변호사의 괴변을 용납해선 안됩니다.

2.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조인) 부패의 집단

원고(하주연)의 호소문- 1. 번사건 2005 나 13829 대여금 사건

본 사건에서 원고(하주연)은 1심(김태균판사)에서 증거제출을 하고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동일사건 3건중에 2건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건에서 패소이유는 김태균판사가 피고(김태부)보다 원고가 명예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액 김태균판사는 피고의 승소이유를 말하기를 "피고가 집에 보관한 돈으로 망이은정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라고 판사가 예상하여 증거없는 피고에게 승소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허위사실확인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무통장입금증을 무시한것입니다. 원고가 동일사건에서 2건을 승소한 것은 판사의 승소이유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피고측확인서는 인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자료는 명백한 증거다 라고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원고의 항소심에서 박윤창 판사가 억지요구를 합니다. 피고가 수령한 일천일백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라고 괴변을 합니다. 항소심 박윤창 판사는 먼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수령한 일천일백만원을 망이은정에게 지급한 증거자료(출금자료)를 요구해야합니다. 1심에서 사실확인조회결과는 피고가 지급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승소건 2건의 선례를 확인하시고 원고의 무통장입금증을 인정하셔서 본건을 피고의 부당이득금으로 판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명백백한 소액사건을 2005. 7. 6. 항소장 접수한 후 2005. 12. 29.재판시에 이유없이 다음재판기일을 2006. 3. 5.로 미루었습니다. 박윤창 판사님 정당한 판결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소액을 2개월씩 장기로 재판기일을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사촌 과부의 피문은 돈 일천일백만원을 10년동안 가로챈 피고(김태부)가 두렵습니까? 박윤창 판사는 후임자에게 미루지 말고 민사판사의 기본 의무인 증거에 의한 정당한 판결을 하십시오.!

피고(반소원고: 김봉석)의 호소문- 2번사건 2005 머 12243 보증금반환

2005 머 12250 (반소) 손해배상

본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2차례의 배려를 거부하고 허위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월80만원을 인하여 타인에게 권리금을 수령하고 양도토록 배려하였고 (내용증명자료) 최종시 원고가 원상복구하면 보증금을 지불하겠다고 예금통장을 복사하여 (내용증명자료)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임대료, 공과금(전기, 상수도), 부가세 관리비 등을 미납하고 허위금액을 건물토지에 가압류하고 먼저 소송을 청구한 계획적 악의적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면 부동산을 경매에서 일게됩니다. 임차인도 계약서에 의한 책임을 이행해야합니다. 현재 원고의 부당행위가 증거와 현장검증으로 입증되었고 신용석판사는 증거에 의한 판결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용석판사는 피고의 원상복구청구비용 ₩17,000,000 에 대한 감정비용을 ₩10,000,000을 결제하였으며 또한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94단독강제조정판사는 2005년 11월 30일이후 2개월이 지나서 2006년 2월 초 강제조정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본건에서 피고는 담당변호사에게 본건은 명백한 증거와 현장검증을 마친상태이오니 강제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변호사는 과도한 감정비용결정에 대하여 또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5개월이 지나서 변론을 사임하겠다고 피고의 정당한 주장을 핍박합니다. 어찌된 법조인들입니까? 피고는 수임료를 몇천만원씩 선불하고 정당한요구를 면박당하였습니다. 피고가 담당변호사에게 임대를 할수 있는냐고 물었더니 감정을 하게되면 현장검증이 소멸되어 피고가 불리하다고 하여 임대를 못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런현실을 체감한 국민은 법조인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사법부의 횡포에 피해본 국민들이 단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찾읍시다.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신을 믿어도 될까요? 이용훈 대법원장님! 이 기막힌 현실을 직시하시어 현명한 대법원장님이 되어주십시오!**

TEL : 02-556-9687, HP : 017-275-1595